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검토보고서.....11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2. 12.(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발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 발 의 자 〉
1.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2.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1. 19. 발의자 :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 제정이유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안 제2조)
- 나. 지원사업 범위 설정 (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근거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주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향교·서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서원 전통의례, 충효·예절 사업
3. 향교·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4.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균관”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유학을 보급하고, 관료를 양성하던 국립대학 성격의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1. 19. 발의자 : 김성우, 이화숙, 구교장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 제정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사업자 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군수·이용자·대여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무단방치 금지 및 군수의 조치권 근거 규정(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도로교통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주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 등”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이 관리하는 도로 등에 한하여,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2. 12.(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6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안 제2조)

나. 지원사업 범위 설정 (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향교·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사업자 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군수·이용자·대여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무단방치 금지 및 군수의 조치권 근거 규정(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사고 및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자·대여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